탄 원 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본안 사건 | 항소심 제출용

수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 귀중
사건번호	2026노648
피고인	노상원
관련 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탄원인	_____ (일반 시민)

1. 탄원 취지: 민간인 신분과 실제 참여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삼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피고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일반 시민이며, 수사기록 전체를 알거나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람도 아닙니다. 공개된 판결과 보도를 접한 뒤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점은, 피고인이 당시 현역 지휘관이 아닌 민간인이었다는 사정과 실제 군 인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인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식 군 지휘권과 비공식적인 요청·협의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실제 참여 범위, 수첩의 의미, 제2수사단 준비와 선관위 관련 조치, 별도 확정 판결과의 관계를 정확히 구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은 법에 따라 판단하고, 유죄가 유지되는 부분은 역할과 결과에 상응하는 양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1심이 인정한 불리한 사실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1심은 피고인이 당시 민간인이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 및 정보사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조치에 관여하고, 인원 선발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준비, 선관위 관련 활동에 참여한 사실 등을 인정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단지 군에서 제적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관여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서도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당시 상대방이 이를 어떤 권한에서 받아들였는지,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했는지를 나누는 일은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공식 지휘권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다른 현역 지휘관의 독립적 결정이 개입했는지에 따라 행위의 귀속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개입은 확인된 대로, 아직 추정에 머무른 부분은 그 한계대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노상원 수첩’은 서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대조하여 평가해 주십시오

본안 1심은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의 연결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것만으로 2023년부터의 장기간 사전 모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22일 박성재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는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고 계엄 준비 시기를 더 이르게 보았습니다. 두 판단이 충돌한다는 사실은 감출 일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논리와 증거를 놓고 더욱 정밀하게 검토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첩에 기재된 인명과 문구가 어떤 시점에 적혔는지, 실제 부대 조치나 인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내용이 김용현 전 장관 또는 다른 인물과 공유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 특정 계획과 개별 행위가 연결되는 정도는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수첩에 적힌 모든 표현을 그대로 확정된 실행계획이라고 보아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재판부의 불리한 평가를 없는 것처럼 처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수첩 자체와 연결되는 객관 자료가 법정에서 충분히 검증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4. 제2수사단 준비와 실제 집행을 단계별로 살펴 주십시오

제2수사단에 관한 논의, 정보사 인원 선발,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의 수집, 현장에서의 대기와 지시, 선관위 관련 출동 및 후속 조치는 하나의 흐름 안에 있더라도 법적 평가의 단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누구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게 했고, 그 목적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설명했는지,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가 무엇인지 세분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명단을 확보한 사실과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특정한 위법행위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반면 실제 체포나 반출이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준비 단계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소심에서는 단계별로 확인된 행위와 실행되지 않은 결과를 구분하여 유무죄 판단과 양형의 의미를 각각 따져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누군가가 인원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사실, 명단을 실제로 넘겨받았다는 사실, 그 명단이 특정 작전을 실행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증명해야 할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이미 확정판결로 판단된 개인정보 수수의 부분을 존중하되, 그 사실로부터 현재 본안의 모든 실행행위와 공모의 범위가 곧바로 증명된다고 추론하지 말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별도로 입증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어떤 후속조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험의 크기와 준비행위의 중요성, 실제 기여 정도를 각각 증거로 따져 본다면 유무죄와 양형이라는 서로 다른 판단 단계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별도 개인정보보호법·알선수재 사건의 확정 결과를 정확히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 이전 탄원서에서 보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대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건이 아직 상고 중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확정판결을 부인하거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위 확정사건과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각각의 범죄 구성요건과 심판대상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별도 기소를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단순히 동일 범죄의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확정된 범죄행위가 현재 사건의 양형에서 어떤 의미로 고려되는지, 그 범위를 중복되거나 과장하여 평가하지 않는지, 확정판결과 본안의 사실관계가 어디서 맞닿고 어디서 갈라지는지를 기록에 기초해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6. 다른 피고인의 무죄 판단과 직권남용 혐의의 구조도 개별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같은 본안 1심에서 김용군과 윤승영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고인 노상원의 행위도 자동으로 무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함께 등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각자가 알고 있던 목적, 전달받은 명령, 실제 실행한 행위가 서로 달라 별도로 판단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관련해서도 현역 공무원의 직권을 민간인인 피고인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공동가공의 의사와 상대방의 의무 없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에서 관련 사실과 법리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공식 직위가 없었다는 사정이나 친분이 있었다는 사정 중 어느 한 가지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리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7. 유죄 유지 시에는 인정된 관여와 결과에 비례하여 양형해 주십시오

1심은 피고인의 사전 준비와 실제 영향력 행사 등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과거 처벌 전력도 양형과 관련된 사정으로 판결문에 등장합니다. 저는 확인된 불리한 자료를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행위를 인정하는 범위와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범위가 정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이미 확정된 다른 사건의 처벌과 현재 사건의 독자적인 책임도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생활 형편, 범행 후 사정은 제가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러한 사정을 무리하게 지어내는 대신, 법정에서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지휘권 여부, 준비행위와 집행 사이의 거리, 공동행위자와의 역할 관계, 미완성 조치의 범위 및 결과가 양형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료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8. 결어: 막연한 의혹이 아닌 구체적인 책임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저는 계엄과 관련해 국민이 느낀 충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크더라도 한 사람의 형사책임은 끝까지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행위와 증거의 범위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첩이라는 문서의 의미가 서로 다른 재판에서 다르게 평가되었다면, 바로 그 차이를 설명하는 치밀한 증거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디 피고인의 신분과 현실적 역할, 수첩 및 제2수사단 관련 증거, 별도 확정사건의 법적 의미를 하나씩 검토해 주십시오. 무죄를 판단할 부분과 유죄가 유지될 경우 형을 정할 부분을 혼동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작은 탄원이 재판부에 부담이 아니라 사실과 법을 더 세심하게 살펴 달라는 시민의 정중한 요청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법률과 증거에 근거한 독립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삼가 탄원드립니다.

탄원인: _____ (서명 또는 날인)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생년월일: _____